

궁금해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1.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 긴급자동차 교육의 구분, 시간, 수강료가 궁금해요.
3. 신규교육을 받은 후 정기교육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4.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5.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 긴급자동차 교육 단체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긴급자동차 교육의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 신규/정기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9. 작년 교육을 이수했는데 왜 올해에도 정기교육 대상자라고 뜨나요?
10. 기타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육 이수 의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18.04.25.에 시행된 긴급자동차 교육의 '22년 이수자는 '25년 말까지 정기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1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ex: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ex: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도로, 전기, 가스, 전신, 전화사업기관 소속 차량 등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긴급운행을 하는 운전자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긴급자동차 교육의 구분, 시간, 수강료가 궁금해요.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1. 신규 교통안전교육(이하 신규교육)
-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수강료 24,000원)
※ 공단지부 교육장, 교통안전 교육센터 및 경찰청 나라배움터에서 신규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규교육 대상자에 해당
2. 정기 교통안전교육(이하 정기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년마다 받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수강료 16,000원)



Q3

신규(정기)교육을 받은 후 정기교육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신규(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3일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2025. 1. 1. ~ 2025. 12. 31.** 중 정기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이수 3년주기를 놓쳤어도 정기교육 대상자이며, 현재 교육 미이수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이수 권장**

Q4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결제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Q5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자동차 운전자 중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법제160조(과태료) 제2항제6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궁금해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1. 긴급자동차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 긴급자동차 교육의 구분, 시간, 수강료가 궁금해요.
3. 신규교육을 받은 후 정기교육은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4.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5.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 긴급자동차 교육 단체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긴급자동차 교육의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 신규/정기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9. 작년 교육을 이수했는데 왜 올해에도 정기교육 대상자라고 뜨나요?
10. 기타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Q6 긴급자동차교육 단체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①~④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단체수강신청 URL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공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① 신청기관 교육대상자가 40명 이상
- ② 신청기관내 교육 담당자 지정 가능
- ③ ②번 담당자가 교육 이수 모니터링 가능
- ④ 공단 담당자에게 아래 3개 자료 송부(메일)
 -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기관 교육 담당자의 명함 및 교통안전 교육센터 ID

Q7 긴급자동차교육의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결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선택 시 교육 신청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Q8 신규/정기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교육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교육 대상자는 올해가 의무 이수 연도가 아닐 수 있으니 과거 이수 연도를 꼭 조회한 후 수강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9 작년 교육을 이수했는데 왜 올해에도 정기교육 대상자라고 뜨나요?

작년에 교육을 이수를 하셨더라도 수강기간 이후 본인 희망 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올해에도 정기교육 대상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의무로 이수하되, 그 외의 연도에도 자율적으로 결제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작년 이수자가 올해에 이수한다면 올해 이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는 연도에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Q10 기타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